

무배당  
푸르덴셜 CEO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 무배당 푸르덴셜 CEO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 인생주기에 맞춘 든든한 보장플랜, 푸르덴셜 생명이 지켜드리겠습니다.

### 01. 사망보장이 체증하여 맞춤 활용이 가능한 평생보장 설계

-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입금액의 최대 300%까지 사망보장이 체증하여 고객자산가의 조기 상속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 물가상승 및 소득상승에 따른 사망보장의 가치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02. 사망보험금의 노후소득 선지급

노후소득개시나이부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매년 자동감액하여 감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을 노후소득으로 노후소득 지급 기간(20년) 동안 선지급해 드립니다.

### 03. 장기유지 고객을 위한 두가지 보너스

(10년이상 유효한 계약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장기유지 고객님께는 매월 펀드 운용보수의 일정비율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UP보너스 : 위험보험료가 예정위험보험료를 초과하여 차감되었을 때, 예정위험보험료 이상으로 차감된 위험보험료 차액의 일정비율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04.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

가입시점 경험생명표 적용으로 노후 준비에 효과적이며, 고객니즈에 따라 원하는 비율 만큼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가입 후 10년 경과시점부터 연금전환 가능)

### 05. 유연한 자금 운용과 여유자금 추가납입

- 경제상황 및 자금 계획에 따라 기본납입기간(24개월) 이후에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계약자적립금 인출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운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는 추가납입과 다양한 펀드 활용을 통해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은 유니버설보험으로 보험료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보험료의 자유로운 납입(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4개월 이후)이 가능합니다.

### 06. 보험료의 적립 및 세액공제 등의 경제적 혜택

고객보험료 적립을 통해 계약자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 드리며,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관련 법규 변경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1

# 우리 가족의 평생자산

## 사망보장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의 곁을 떠날 경우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퇴시기에 맞추어 노후소득 선지급을 활용하시면 사망보험금을 든든한 은퇴자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평생자산의 활용

### 노후소득 선지급

매년 사망보장의 일부를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을 “노후소득 선지급금<sup>주1)</sup>”으로 가입시 정한 노후소득개시나이부터 노후소득 지급기간(20년)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1) 노후소득 선지급금 =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 계약자적립금  
+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계약자적립금

### 연금전환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 의무부가특약 : (무)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
- ※ 가입후 10년 경과시점부터 연금전환 가능
- ※ 거치적립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전환 이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0%)로 최대 10년까지 운용한 이후 연금 개시 가능(연금개시나이 : 45세~80세)
- ※ 연금형태 : 종신연금(100세보증), 확정연금(5/10/15/20년확정), 상속연금
- ※ 보험료납입한도 : 일시납 보험료 1,000만원 이상

### 유가족연금전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 의무부가특약 : (무)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
- ※ 연금형태 : 종신연금(100세보증), 확정연금(5/10/15/20년확정), 상속연금
- ※ 신청 가능 대상 :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 ※ 연금전환나이 : 0~80세(단, 종신연금은 45세~80세)
- ※ 보험료 납입한도 : 일시납보험료 1,000만원 이상

### 간병자금

실버널싱케어특약을 추가하여 60세 이후 장기간병상태가 되었을때 주계약 사망보장금액의 최고 80%까지 장기 간병 선지급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장기간병상태 : 중증치매(CDR척도 3, 4, 5점) 또는 일상생활 장애상태(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화장실/목욕/옷 입기 중 1가지를 스스로 못하는 상태)
- ※ CDR척도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장기간병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선지급대상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며, 감액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노후소득 지급기간 중에는 장기간병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

# 상품내용

## 가입안내

보험기간		납입주기		가입한도	
종신		월납		최저 1억원 이상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조기체증형		
			10년형	20년형	
5년	만15세 - min(53, A-15)세		만15세 - min(36, A-15)세		
10년	만15세 - min(66, A-15)세		만15세 - min(49, A-15)세		
15년	만15세 - min(63, A-15)세		만15세 - min(59, A-15)세		
20년	만15세 - min(59, A-15)세		만15세 - min(60, A-15)세		
25년	만15세 - min(55, A-15)세		만15세 - min(55, A-15)세		
30년	만15세 - min(50, A-15)세		만15세 - min(50, A-15)세		
55년	만15세 - min(45, A-15)세		만15세 - min(45, A-15)세		
60년	만15세 - min(50, A-15)세		만15세 - min(49, A-15)세		
65년	만15세 - min(55, A-15)세		만15세 - min(53, A-15)세		
70년	만15세 - min(60, A-15)세		만15세 - min(56, A-15)세		

※ A : 노후소득개시나이를 말하며 이 보험을 가입할 때 60세~80세 중 최소 “가입나이+15세” 이후(단,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로 선택가능합니다.

## 보장내용

급부명	지급사유	보험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금,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 101%,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가장 큰 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
- 기본보험금 : 계약체결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체증나이(가입나이+1세)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기간<sup>주)</sup> 동안 매년 10%씩 증액된 금액을 말하며,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본보험금에서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본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주) 체증기간 : 조기체증형 10년형은 10년, 20년형은 20년

※ 단, 고의적 사고 및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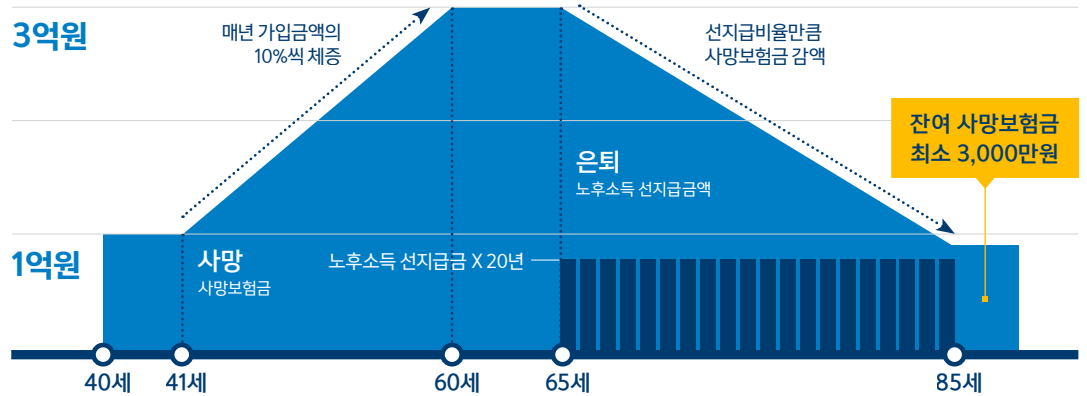
## 보험료 예시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조기체증형	10년형	397	498	627	355	444	558
	20년형	579	723	898	518	649	812

※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50%입니다

도해도  
조기체증형  
20년형

1. 노후소득 선지급시 : 노후자금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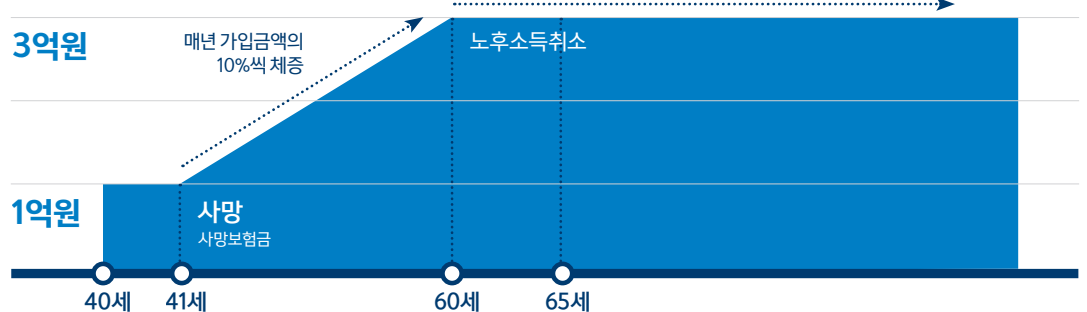
남자 40세, 1억원가입, 20년납, 채권형펀드 100%, 노후소득 개시나이 65세, 월납보험료 : 723,000원

노후소득 선지급금 예시 (특별계정운용수익률(연복리 가정) -1% 가정)



- ※ 노후소득 선지급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며,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 계약자적립금'은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 예정적립금을 최저한도로 보증합니다. 상기 금액은 추가 납입 및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없이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정상납입하였을 경우의 예시이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이용하셨거나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정상납입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은 최초 노후소득을 선지급하기 직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4.5%로 정합니다
- ※ 노후소득을 지급한 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만큼 감액됩니다. 이 때,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 상기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노후소득취소시 : 상속재원으로 활용



- ▶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101%, 이미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보장합니다.
- ▶ 단,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 상품내용

### 최저보증

최저사망보증기간동안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최저사망 보험금으로 보증하며, 또한 사망보험금의 노후소득 선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 없이 노후소득 지급 기간 동안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 계약자적립금”은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 예정적립금”으로 최저보증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보험료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한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보증기간은 기본보험료의 납입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보험계약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I: 계약자적립금의 연0.1%(단, 채권형·단기안정채권형 0.0%)을 매일 특별계정(펀드) 적립금에서 차감하며 이는 특별계정(펀드)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II: 매월 계약자적립금에서 아래와 같이 차감합니다. 단, 노후소득 선지급 취소 또는 중지 시 더이상 차감하지 않습니다.
  - 조기체증형10년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1.2%(단, 12년 이후 0.2%)+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연1.0%(7년간 차감)
  - 조기체증형20년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1.5%(단, 12년 이후 0.3%)+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연1.4%(7년간 차감)
- ※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매월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시고 계약자적립금 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종신까지 최저사망보험금 보장이 가능합니다.

### 펀드선택 및 변경

기본보험료 납입펀드를 3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으며,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및 보험료 투입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펀드별 기본보험료 편입비율은 5% 단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기안정채권형 펀드는 선택하실 수 없으며, 펀드 및 보험료 투입비율 변경시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최대 25%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최대 25%까지 가능합니다.

※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범위내(최대5,000원)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연4회 수수료 면제)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계약성립 1개월 후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납입면제로 인한 기본보험료 납입분 포함)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 ※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후 계약자적립금이 연간기본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단, 계약자적립금 인출 및 리빙베네티인출서비스를 합하여 연 4회 수수료 면제)
- ※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리빙베네티인출서비스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계약자는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리빙베네티인출서비스를 통해 가입 금액의 1~10%(1% 단위로 선택 가능)씩 계약자적립금을 자동으로 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리빙베네티인출서비스 횟수를 합하여 연 4회 수수료 면제)
- ※ 다음의 상황에서 리빙베네티인출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총인출누계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납입면제로 인한 기본보험료 납입분 포함)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중지신청이 있을 경우, 노후소득 선지급이 지급개시된 경우

##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경과 후에는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의 총당이 가능할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계약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제외) 총액의 2배 이내로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 ※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포함)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고,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누계만큼 더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 고객보험료 적립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적립률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5%
5억원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0%

주)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후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률을 적용합니다.

## 장기유지 보너스

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10년 경과한 시점 이후의 월계약해당일로부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총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기본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 ※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 매월 계약해당일 전일 말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 × 월단위 특별계정 운용보수(%) × 35%
- ※ 월단위 특별계정 운용보수(%)란,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에 곱하는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비율을 월단위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 노후소득 지급기간 중 노후소득 지급이 있을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 전일 말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노후소득 지급 직전 계약자적립금을 의미합니다.

## UP보너스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이고 차감된 위험보험료가 예정위험보험료를 초과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연계약해당일에 기본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총당할 수 없게 된 경우 UP보너스 금액을 기본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 ※ UP보너스 지급기간 :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로부터 피보험자의 80세 연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
- ※ UP보너스 금액 : 직전 1년간 매월 예정위험보험료를 초과하여 차감한 위험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 20%
- ※ 예정위험보험료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정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위험보험료

## 사망보험금의 노후소득 선지급

지급기간	노후소득 선지급금
노후소득개시나이 <sup>주1)</sup> 가 되는 계약 해당일로부터 노후소득 지급기간(20년) 동안의 연계약해당일	“선지급대상 보험가입금액 <sup>주2)</sup> 에 해당하는 기본 계약자적립금 <sup>주3)</sup> + “선지급대상 보험가입금액 <sup>주2)</sup> 에 해당하는 추가 계약자적립금”

주1) 노후소득개시나이는 가입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60세~80세 중 최소(가입나이+15세) 이후(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노후소득 선지급개시 전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2)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은 최초 노후소득을 선지급하기 직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4.5%로 정합니다.

주3)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 계약자적립금”은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 예정적립금”을 최저한도로 합니다. (“예정적립금” 이라 함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특별계정 투

02

## 상품내용

- 입보험료에서 월공제액 및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 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비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시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 노후소득을 지급한 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만큼 감액됩니다. 이 때,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단, 특약(특별조건부특약 제외)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 ※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의 “노후소득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전 12개월 이내에 **노후소득 선지급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하지 않고 노후소득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노후소득 선지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노후소득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노후소득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노후소득 선지급이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 ※ **사망보험금의 노후소득 선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후소득 선지급 예시]

조기체증20년형, 노후소득개시나이 60세  
 노후소득 선지급개시 직전의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1억원  
 노후소득 선지급 직전의 기본 예정적립금: 1억2천만원

(사례1) 기본 계약자적립금이 기본 예정적립금보다 큰 경우 : 기본 계약자적립금 1억 4천만원  
 노후소득 선지급 직전의 추가 계약자적립금 : 3천만원

- 노후소득 선지급후 보험가입금액 = 1억원 × (1 - 4.5%) = 9,550만원
- 노후소득 선지급후 기본 계약자적립금 = 1억 4천만원 × (1 - 4.5%) = 1억 3,370만원
- 노후소득 선지급후 추가 계약자적립금 = 3천만원 × (1 - 4.5%) = 2,865만원
- 노후소득 = 계약자적립금(1억 4천만원+3천만원)×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 비율(4.5%) = 765만원

(사례2) 기본 계약자적립금이 기본 예정적립금보다 작은 경우 : 기본 계약자적립금 1억 1천만원  
 노후소득 선지급 직전의 추가 계약자적립금 : 2천만원

- 노후소득 선지급후 보험가입금액 = 1억원 × (1 - 4.5%) = 9,550만원
- 노후소득 선지급후 기본 계약자적립금 = 1억 1천만원 × (1 - 4.5%) = 1억505만원
- 노후소득 선지급후 추가 계약자적립금 = 2천만원 × (1 - 4.5%) = 1,910만원
- 노후소득 = 계약자적립금(1억 2천만원 + 2천만원) ×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 비율(4.5%) = 630만원

### 노후소득 선지급금 예시

나이	납입 보험료 누계	선지급 이후 가입금액	노후소득 선지급금		
			특별계정수익률(연복리 가정)		
			-1.00% 가정	2.50% 가정	3.75% 가정
65년	17,352	9,550	837	837	854
70년	17,352	7,300	921	921	996
75년	17,352	5,050	1,004	1,004	1,161
80년	17,352	2,800	1,081	1,081	1,369
85년	17,352	1,000	-	-	-

- ※ 기준 : 조기체증20년형, 남자 40세, 1억원 가입, 20년납, 채권형펀드100%, 노후소득 개시나이 65세, 단위 : 만원 (천원 이하 절사)
- ※ 노후소득 선지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 보험료의 납입시기, 추가납입 및 계약자적립금 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예시

### 조기체증형 10년형

경과 기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별계정수익률(연복리 가정)								
		-1.00% 가정시			2.50% 가정시			3.75% 가정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597	10,000	-	0%	10,000	-	0%	10,000	-	0%
3년	1,792	12,000	702	39%	12,000	758	42%	12,000	778	43%
5년	2,988	14,000	1,492	49%	14,000	1,645	55%	14,000	1,703	56%
10년	5,976	19,000	3,356	56%	19,000	3,966	66%	19,000	4,214	70%
20년	11,952	20,000	6,874	57%	20,000	9,686	81%	20,000	11,014	92%
30년	9,262	15,500	3,982	42%	15,500	8,897	96%	15,500	11,731	126%
40년	3,884	6,500	305	7%	6,500	4,070	104%	6,927	6,879	177%
50년	1,195	2,000	-	0%	2,000	828	69%	3,040	3,019	252%

### 조기체증형 20년형

경과 기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별계정수익률(연복리 가정)								
		-1.00% 가정시			2.50% 가정시			3.75% 가정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867	10,000	-	0%	10,000	-	0%	10,000	-	0%
3년	2,602	12,000	1,084	41%	12,000	1,168	44%	12,000	1,198	46%
5년	4,338	14,000	2,247	51%	14,000	2,475	57%	14,000	2,560	59%
10년	8,676	19,000	4,992	57%	19,000	5,893	67%	19,000	6,259	72%
20년	17,352	29,000	10,190	58%	29,000	14,331	82%	29,000	16,285	93%
30년	13,447	23,250	5,837	43%	23,250	13,021	96%	23,250	17,156	127%
40년	5,639	9,750	387	6%	9,750	5,830	103%	9,964	9,894	175%
50년	1,735	3,000	-	0%	3,000	984	56%	4,332	4,301	247%

※ 기준 : 남자40세, 1억원가입, 20년납, 채권형 펀드 100%, 노후소득 개시나이 65세, 단위 : 만원(천단위이하절사)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sup>II</sup> 등이 차감됩니다.

※ 특별계정(펀드) 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sup>I</sup>,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특별계정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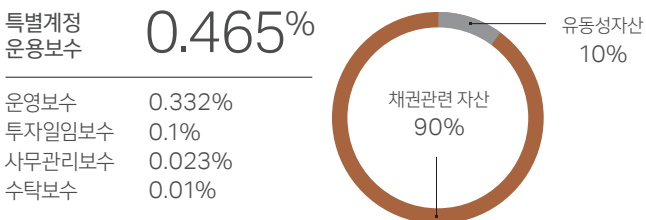
03

# 펀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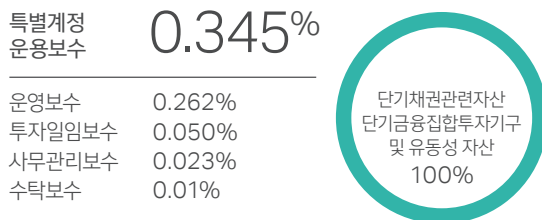
**믿고 맡길 수 있는 푸르덴셜이 함께합니다.**

푸르덴셜생명의 '무배당 푸르덴셜 CEO변액유니버설종합보험'은 투자대상을 다각화하여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다양한 펀드를 제공합니다. 모든 펀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엄격하게 설정되며 지속적으로 관리·운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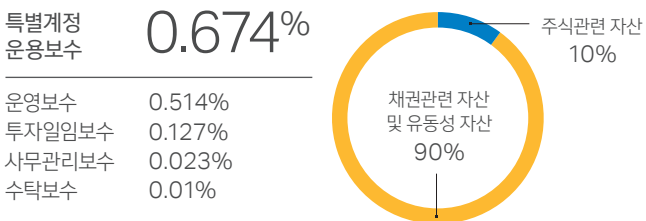
### 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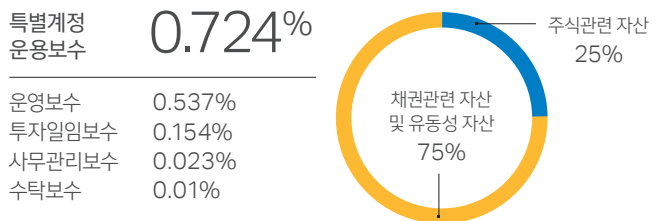
### 단기안정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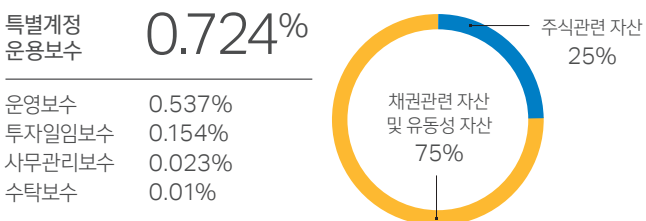
### 안정혼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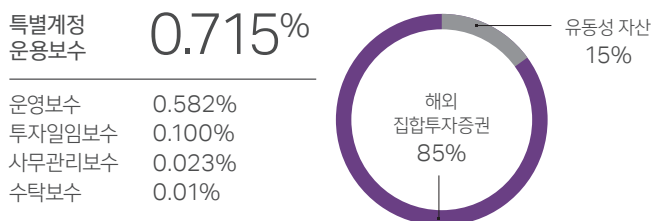
### 혼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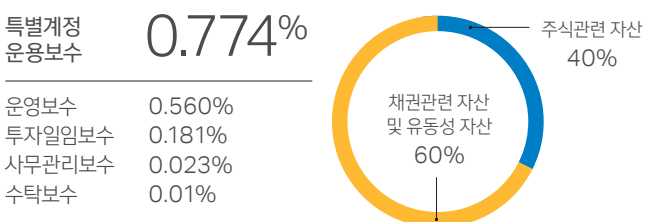
### 배당혼합형



### 해외혼합형



### 롱텀밸류혼합형



- \* 기준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부과 : 특별계정적립금의 "특별계정 운용보수"/365를 매 일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 상기 펀드 운용시 자산의 일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펀드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상기 펀드 운용시 자산의 일부를 해외에 투자할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주식관련 자산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 채권관련 자산 :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 유동성자산 : CD, 기업어음, MMF, 예금 및 기타 유동성 자산

# 알아두실 사항

## 1. 무배당 푸르덴셜 CEO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의 판매자격

· 무배당 푸르덴셜 CEO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모집 종사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2. 기준가격 및 순자산가치 확인

· 무배당 푸르덴셜 CEO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는 푸르덴셜 홈페이지 변액보험공시실(www.prudential.co.kr)이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상 “공시실 > 상품 비교공시 > 변액보험 > 펀드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3대 기본원칙 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4.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5. 기존계약 해지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계약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8. 청약철회 청구

·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센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구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9. 보험료 자동납부제도 안내

· 보험료 자동납부란 별도의 고지서 발행 없이 보험료 납부자의 예금 계좌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험료를 인출하여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려면 당사 또는 거래은행의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0.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해당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후에는 해지환급금(단, 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11.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푸르덴셜생명 CS Center나 사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02-2262-6565)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노후소득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장기간의 보험료미납 또는 과도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해지환급금이 월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푸르덴셜 CEO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푸르덴셜 CEO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푸르덴셜, **당신의 삶을** 담다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타워  
Tel. 02-2144-2000 Fax. 02-2144-2100 CS Center, 1588-3374 수신자부담전화. 080-928-3838  
준법감시인확인필-SM-1903004-1-18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0723호 (2019.03.12)  
인쇄일자, 2019. 04. 01